입법동향 – 2025년 제12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발행부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280-4415)

편집·검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지원팀(☎ 280-4414)

인　　쇄: 2025년 12월　일

발　　행: 2025년 12월　일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7
2.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 10
3.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등에 관한 조례」 ·· 14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 19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52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59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 65
2.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입법례 ····· 74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87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액화석유가스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한 조례 규정 가능 여부 ····· 91
2. 강연 등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94

Ⅵ. 법령 해석 사례

1.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1
2.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2., 대전광역시조례 제6531호, 2025. 10. 2., 제정】

□ 상임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와 교육을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총 4곳) : 서울, 경기, 대전, 충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반려견 순찰대 지원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시행**(2024.7.15.)하여 **현재 4곳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음.

○ 반려견 순찰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려견은 **리드워킹(따라걷기), 대인반응 코스, 기다려 코스 등** 일정 수준의 **테스트를 거쳐 선발됨.**

○ **반려견 순찰대**를 처음 도입한 서울에서는 반려견 순찰대원이 산책 도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발견해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트럭 밑에서 자고 있던 주취자나 가출청소년, 실종아동, 치매 어르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례가 있음.**

○ 반려견 순찰대의 자발적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공적 치안 보조 체계로 자리잡아 범죄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시행 2025. 10. 2., 대전광역시조례 제6531호, 2025. 10. 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와 교육을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견 순찰대 운영 등) ①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반려견 순찰대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그 밖에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반려견 순찰대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5. 11.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43호, 2025. 11. 19., 제정】

□ 상임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총 1곳) : 제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금융 사기와 금융 정보 격차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금융지식이 약한 도민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는 모두 799건으로 피해금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298억에 달함.(2025년 11월 기준, 전주MBC).

○또한 노년층,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자 등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금융정보에 접근이 어려워 기본적인 금융 거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바,

○금융범죄 예방,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5. 11. 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43호, 2025. 11.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높은 금융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금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사기 예방 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금융소비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올바른 금융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금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도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3.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

4.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에 관한 사항

5. 금융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매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대상) 금융교육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포함한다)

2. 청소년 및 청년, 고령층

3. 금융취약계층 및 신용회복 대상자

4. 농어촌거주자, 이주민 등 금융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

제7조(금융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금융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금융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금융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및 부서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금융교육 관련 교원

3. 금융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 금융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등 금융교육과 관련한 사람

5. 그 밖에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방식) 금융교육은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콘텐츠, 체험형교육, 상담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도지사는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또는 금융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05호, 2025. 11. 7., 제정】

□ 상임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법령의 공백**으로 인해 **사용 권장 연령과 관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위해제품**을 **감시하는 단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어린이 보호**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정의, 도지사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3조).
나. 어린이위해제품 감시단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5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강원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발 해외직구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 등의 안전임(KTV 대한뉴스 7, 24.11.21.)

※ 중국 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재**가 **최대 476배나 초과 검출**됨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인증 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은 **'19년～'21년 감소**하였으나, **'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임

※ (20년) 28.4% → (21년) 19.3% → (22년) 21.5% → (23년) 21.9%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는 연 19.3조원(20년～23년 추정)으로 **연평균 5.3%성장**하고 있고 **해외직구 금액은 897억 원**(20년～23년)으로 **17년～19년 평균 606억원 대비 약 43%증가**함

○ 어린이제품 **유통규모 증가**로 **위해제품 역시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7.,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705호, 2025. 11. 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위해제품"이란**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게 **어린이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2. 어린이위해제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의 판매 관련 제도의 개선 건의**
4. 어린이위해제품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어린이위해제품 판매 행위의 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 감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 성과가 뛰어난 감시단 단원과 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에 공로가 현저한 공무원 및 모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어린이위해제품의 부적절한 판매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1., 대통령령 제35852호, 2025. 11.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위원장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직무·소양 및 윤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90조(교육의 실시)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이하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조합임원등이 법 제1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운영·윤리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참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 사실을 조합임원등이 소속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취지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조합의 공정한 운영과 전문적 운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건설제도,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등을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그 밖의 운영·윤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025. 11. 18.)되었으나 우리 도 관련 조례에는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25. 8. 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854호, 2025. 8. 8.,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3.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4.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5.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6.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강구조인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최초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필지수가 30퍼센트 이상인 지역

마. 대상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바.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전체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 내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비용처리 절차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③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회신 및 정비계획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을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획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 등 사업의 경제성

2. 조합설립 가능성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제13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⑦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서류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 사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할 것) 현황과 증빙서류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할 것)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군수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7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8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별지 제5호서식의 조합원 명부를 작성하고, 조합원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9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20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22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3. 영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4.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인·허가 등을 받을 당시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5조(정비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법 제101조의6제2항, 영 제80조의2제6항 및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500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2. 20m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50m이내

③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지역 임대주택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의 특례) 시장·군수는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영 제5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9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로부터 신청을 받아 별표 2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2조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0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이 제정·시행된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해당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순환용주택 이주 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2.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 수가 1,000호를 초과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시·군 주택 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시·군의 다른 정비구역(이 조례 시행 이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거나 인가된 정비구역을 말한다)의 기존 주택 수를 더한 합계가 3,000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의 주택공급, 멸실 현황, 정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 자료

2. 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경우,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및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2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에 따른 금액

2. 영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으로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

제32조의3(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법 제79조제5항 및 영 제68조에 따라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인수가격으로 조합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 서류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인수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계약금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액의 10퍼센트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20퍼센트, 40퍼센트, 60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영 제75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후에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그 밖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해당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군수가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군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주택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5조(국·공유지의 관리처분 등) ①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③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매각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장 감독 등

제36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4조제3항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와 공사완료 고시

8. 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해제 및 고시

9.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자가 사업 시행 실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38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위원 자신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위원의 해촉) 시장·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힌 때

4. 위원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45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해당 시·군의 예산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거나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3. 그 밖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의 기관 중에서 위탁지원자를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장 보칙

제56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과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와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와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5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②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와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1. 24, 교육부령 제369호, 2025. 11.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역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위탁기간을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일 부 개 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2.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전북에는 15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음(2025년 10월말 기준)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위탁체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최소 3년은 운영을 보장**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위탁체로 선정된 업체가 **부실 경영 등을** 하더라도 **3년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적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구분	장단점
국공립	장점: 국가나 지자체 운영으로 저렴 단점: 안정성 높으나 대기기간이 오래걸림
민간	장점: 개인이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 다양 단점: 시설 편차가 큼
가정	장점: 주택 등에서 소규모 운영 아늑함 단점: 교사 비율이나 운영의 질 차이 발생
공공형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정부 평가 후 인증)	장점: 국공립급 서비스+시설유지 비용 민간보다 저렴 단점: 입소 대기 기간이 길고 경쟁률 높음
직장	장점: 회사나 기관이 직원 자녀 대상으로 운영 단점: 이용 자격 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전북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각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 <삭제 2015. 10. 30>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때
2.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5. 10. 30>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사, 영양사, 전산요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자격을 갖춘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보육전문가 등 센터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보육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안전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건강 및 영양)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성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과 협의하여 질병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급식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0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일 부 개 정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생략)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④ (생략)
〈신설〉	⑤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교육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전주시 소재 **학교 수**는(2025. 4. 1.기준) **253개교**로 도내 1,219개교 중 **20.7%**를, **학생 수는** 81,184명으로 도내 189,169명 중 **42.9%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 교육지원청의 비대함을 지적**하며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현되지 않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시·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 1. 18.)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등의 특례로 **전주교육지원청 분리를 재시도** 하였으나 **특례에 반영되지 않음**

○ 이번 상위법 개정은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지원청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법 시행(2026. 5. 12.) 전(前)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28호, 2024. 6. 7.,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3조 (생략)

제3조(교육지원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생략)

제2장(본청) 제1절~제7절 (생략)

제4장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제1절 학생복지회관

제24조 ~ 제25조 (생략)

제2절 도서관

제26조 ~ 제27조 (생략)

제3절 영어체험학습센터

제28조 ~ 제29조 (생략)

제4절 외국어교육센터

제30조 ~ 제31조 (생략)

제5절 그 밖의 교육지원시설

제32조 ~ 제33조 (생략)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22호(통권 제285호), 조경희】

◇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가 약화되고, 평균수명의 연장,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분가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언'제도**는 **사망 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일본**은 증가하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과 「법무국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언서 보관법')을 제·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자필)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어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법무성 내에 설치된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는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을 논의하고, 관련 보고서를 2025년 7월에 공개**하였다.

◇ **우리 민법**에는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두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녹음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언증서 보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2020.5.30.~2024.5.29.)**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공정증서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처럼 편리하면서도 유언자의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 디지털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의 입법 동향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관련법	민법, 공증인법
주제어	자필증서, 공정증서, 유언증서 보관제도, 전자공정증서, 디지털 유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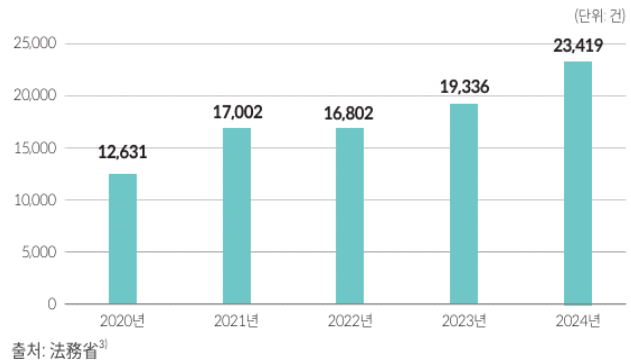
□ 도입

❍ **일본 민법**은 보통방식의 유언으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두고 있고 이 중에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자필증서와 관련해서는 (자필) 유언증서 보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증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가 도입**되었다. 나아가 일본 법무성은 **개인 휴대전화나 영상기기를 이용한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018년 7월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와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과 유언서 보관법을 제·개정하여 **2020년 7월부터 (자필) 유언 증서 보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유언증서 보관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우리나라 법원 등기관서에 해당)에 자필 증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총 12,631건, 2024년에는 총 23,419건이 접수되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유언증서 보관제도 이용 현황



출처: 法務省[3]

❍ **유언증서의 디지털화**는 법원의 민사재판 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정부 방침 아래 **현행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2023년 6월 「공증인법」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 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법률」이 제정되었다. **디지털 공정증서**는 **화상을 통해 공증절차를 진행하고, 작성된 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한편, 2024년 4월 법무성은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에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 검토회는 2025년 7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여 유언증서의 진정성(진위 보장) 확보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유언증서 보관제도

1. 주요 내용

❍ 일본은 **2018년 민법과 유언서 보관법을 제·개정하여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보관기관의 지정, 보관된 유언증서의 열람 및 통지 그리고 민법상 검인(檢認)제도의 존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다.

- **【보관기관 지정】** 유언증서 보관기관은 유언증서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제를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유언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무국을 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열람 및 통지 절차】** 법무국은 **상속인 중 1인이 유언증서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유언증서 보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유언증서 열람 및 통지 요청자(상속인 등) 이외에도 다른 상속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원본 유언증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언증서 이미지 데이터는 관할이 아닌 다른 법무국에서도 상속인 등이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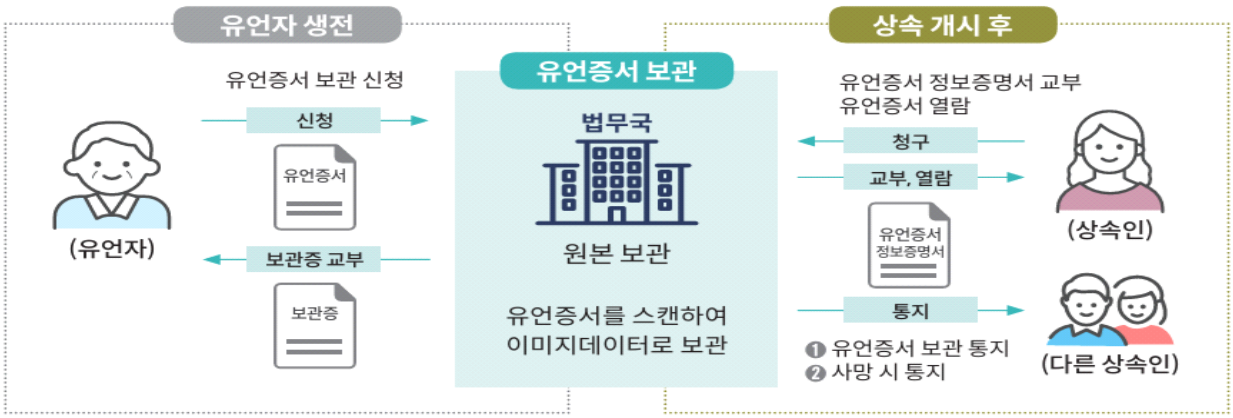
- **【검인제도 적용 제외】** 민법상 검인제도는 유언자 사망 이후 법원이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법무국에 이미 보관 중인 유언증서는 위·변조 위험이 현저히 낮아 검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검인제도 적용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용 절차

❍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이용은 크게 유언자에 의한 보관 신청 절차와 상속인 등의 열람 및 법무국의 통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 **【자필증서 작성】** 자필증서는 원칙적으로 양식이나 봉인 여부에 제한이 없지만,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필증서는 법무성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봉인해서는 안 된다**.
- **【유언자에 의한 보관 신청】** 유언자는 법무성이 지정한 법무국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증서의 원본과 신청서,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신청은 유언자의 주소지, 본적지,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가능**하다.
- **【법무국의 형식 확인 및 보관】** 법무국은 유언자 본인 확인과 문서 형식의 적정성만을 심사하며,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원본은 법무국에 보관**하고, **원본의 이미지데이터는 전국 법무국 간에 공유**한다. 그리고 **유언자는 언제든지 보관을 철회할 수 있다.**
- **【상속인 등에 의한 열람 및 증명서 교부 청구】 상속인 등은** 유언증서의 존재나 내용을 확인하여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국에 유언증서 정보증명서 교부, 유언증서 보관증명서 교부, 유언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 **유언증서의 원본 열람은 해당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법무국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지데이터 열람은 전국 어느 법무국에서도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제도 이용 방식



출처: 内閣府大臣官房[8]

□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 일본 공증인법은 공정증서의 작성·보존 그리고 정본·등본의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무성은 기존 공증 절차가 서명·날인 및 대면 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2022년 12월** 이러한 절차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공증실무 디지털화 관련 실무자 협의회'**(이하 '공증실무협의회')를 **설치**하였다. 공증실무협의회는 **공증 절차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논의한 뒤 2023년 3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023년 6월 개정된 공증인법에 대부분 반영되었다(2025년 10월 시행).

표 1 일본의 기존 공정증서와 디지털 공정증서의 비교

구분	기존 공정증서	디지털 공정증서
촉탁(신청)	•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두하여 촉탁 • 인감증명서 등 서면으로 본인 확인	• 공증사무소에 출두하지 않고 촉탁 가능 • 전자기록으로 본인 확인
촉탁인 진술, 내용 확인	• 공증인이 촉탁인과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공정증서의 진위 확인	• 촉탁인의 요구와 공증인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터넷 화상방식으로 진술 및 내용 확인 가능
공정증서(원본) 작성 및 보존	• 공정증서 원본을 서면으로 작성·보존 • 촉탁인과 공증인의 서명·날인 필요	• 공정증서는 전자데이터로 작성·보존 • 전자서명 등 정비
정본과 등본 교부	•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을 서면으로 교부	• 전자데이터로 발급 가능 ※ 서면 교부도 선택 가능

출처: 法務省

- 법무성의 공정증서 디지털화 방향은 공정증서 원본을 원칙적으로 전자 데이터로 작성·보관하고, 공정증서의 정본·등본에 상당하는 효력을 가진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며, 공증인과 촉탁인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대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특히 **유언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는 **유언자의 본인 여부, 유언 능력 그리고 진정성 확보**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쟁점에 대해 공증실무협의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유언자의 진술과 내용 확인을 대면방식과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구분하고, 전자의 **대면방식은 기존 절차를 유지**하는 반면, 후자의 **온라인 화상방식**의 경우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개정 공증인법**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유언자가 온라인 화상방식을 요구하고 공증인이 그 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화상방식의 공증 절차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양로원이나 병원 등에서 공증인과 시설 직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환경을 정비한 후에, 화상방식을 통해 유언자의 진술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일본 법무성 디지털 유언증서 방안

❍ 일본 법무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언 방식 제도화를 위해 법제심의회 산하에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설치**하였다. 검토회는 **유언의 진정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2025년 7월 중간보고서에서 다음의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2 법무성 디지털 유언증서 관련 4가지 도입 방안

구분	기록 및 보관	진정성 확보방안	장점	주요 한계
제1안	전자기록· 본인 보관	증인 2인 이상 입회	• 공공기관 개입 없음 • 증인이 입회하므로 녹음·녹화 위·변조 우려 적음	• 증인 확보 필요 • 법원 검인 필요 • 분실·파손 위험
제2안	전자기록· 본인 보관	민간사업자 유언절차지원 서비스 활용	• 공공기관 개입 및 증인 입회 불필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우려 적음	• 비용 부담 • 법원 검인 필요 • 분실·파손 위험
제3안	전자기록· 공공기관 보관	전자서명과 공공기관 확인	• 법원 검인 불필요 • 공공기관 확인·보관으로 위·변조 우려 적음	• 공공기관에 출두 또는 화상방식으로 유언 전문 구술 • 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평일 이용 불편
제4안	서면· 공공기관 보관	종이 서명과 공공기관 확인	• 법원 검인 불필요 • 공공기관 확인·보관으로 위·변조 우려 적음	• 기존 제도와 유사 • 디지털 활용도 낮음

출처: 法務省

❍ 제1안】 **증인 입회 전자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 등을 전자기록으로 작성한 뒤,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전자기록된 유언의 취지와 전문 등을 구술한다. 증인은 유언자의 전자기록 내용이 구술과 일치한다는 점과 자신의 신원 정보를 함께 구술한다. 제1안은 **구술과 상황을 모두 녹음·녹화하여 전자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그림 3 증인 입회 전자유언



- **공공기관의 개입이 없고 시간 제약이 적어 개인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 후에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요**하며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인 입회 부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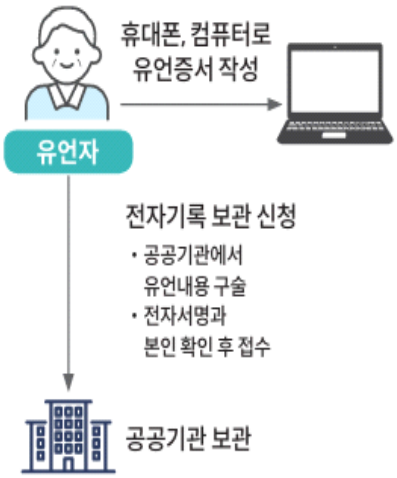
❍【제2안】 민간 유언절차지원서비스 전자유언

- 증인 대신에 **민간사업자의 유언절차지원서비스를 통해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 민간사업자의 유언절차지원서비스를 이용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만, 증인 입회가 필요없고 온라인 접근성이 높다. 제2안은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주도형 유언 관리 모델**이다.

❍【제3안】 전자유언의 공공기관 보관

- 유언자가 **전자서명한 유언증서를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송부**하고, **공공기관이 본인 확인과 보관을 담당**한다.
- **공공기관에 보관할 때 본인 확인**하여 진정성을 확보하므로 **법원의 검인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유언자가 공공기관에 출두하여 전문을 구술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일 방문의 제약**이 있다. 다만, **유언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화상방식의 구술도 가능**하다.

그림 4 공공기관 보관 전자유언



❍ 【제4안】 서면유언의 공공기관 보관

- 유언자가 서면 형태의 유언증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에 제출·보관하는 방식이다. 본인 확인 과정이나 보관 절차가 제3안과 유사하나, 서면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낮은 방안이다.

□ 요약 및 결론

❍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녹음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규모 확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상속 개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1년과 2025년에 따르면, 상속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44,927건에서 2024년 63,545건으로, 유언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342건에서 2024년 44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일본**은 유언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자필)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상속인은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도 법무국에 보관된 유언증서를 열람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민사재판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 방침에 따라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는 **'디지털 유언증서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디지털 유언증서**는 **자필 유언증서보다 작성 부담이 적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의 진정성 확인 등 과제를 해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유언증서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의사 확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유언데이터 보안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21호, 통권 제284호, 안성경】

❍ **우리나라**는 사업주 및 경영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건설현장에서는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을 규율하고자 **1996년 제정**된 일반법인 **「산업안전보건법(ArbSchG)」**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보건시행령(BaustellV)」**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1998년 동시행령의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독일에서 고용주는 엄격하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과실일지라도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한 경우에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 독일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중심적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GeKo)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고 후에는 **사회보험을 통해 보상**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법적으로 건축주, 설계자, 고용주 모두 안전 확보의 의무가 있으며,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

관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주제어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안전보건코디네이터, 산업재해보험

□ 도입

❍ **독일**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ArbSchG)」**)에서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동법은 1992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의 「건설현장지침(Richtlinie 92/57/EWG)」을 국내법화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Baustellen-verordnung: BaustellV)」에서 실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1998년 「건설현장 안전보건시행령」 시행 이후**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현저히 줄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 **우리 정부**는 올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8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사업자의 사고대응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20~2024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 **독일**은 건설현장의 설계 및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을 고려해야 하고, **안전보건코디네이터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위험을 설계 단계에서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산업재해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한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에서의 사고예방

1. 개요

❍ 독일연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Bundesrat)의 동의를 받아 시행령을 통해, **사용자 및 그밖의 책임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동법에 기초한 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가 취해야 할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

❍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상당히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사전고지(Vorankündigung) 의무가 있으며 동시행령이 적용된다(제2조제2항 제1문).

- ☑ 작업 예상 기간이 30일 이상이고,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근무하는 건설현장
- ☑ 작업범위가 500인일(Personentage)[8]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현장

그림 1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의 주요내용[9]



2. 건설프로젝트의 안전보건계획

❍ 건설프로젝트의 실행을 계획할 때 특히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할 작업을 분배하고, 이 작업의 수행 시간 책정 시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제2조제1항).

- ☑ 생명 및 육체적·심리적 건강에 대한 위험의 방지 및 현존하는 위험의 회피 및 최소화
- ☑ 위험의 근원 제거
- ☑ 최신기술, 산업의학 및 위생학과 학문상 확립된 이론을 고려한 조치 실행
- ☑ 기술, 근로 체계, 그 밖의 근로조건, 사회적 관계 및 작업장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수립
- ☑ 개별 보호조치 후순위 실행
-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업집단에 대한 특수위험 고려
- ☑ 노동자에게 적절한 지시 시달
- ☑ 성별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다른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의 허용

❍ 동시행령 제4조에 따른 책임자는 적어도 <부록I>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건설계획 사전 고지를 건설현장이 설치되기 2주 전에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계획을 건설 현장에 게시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제2문).

❍ 건설현장에서 **<부록Ⅱ>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고용주는 건설현장이 설치되기 전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해당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명시하고, **<부록Ⅱ>에 따른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계획을 세울 때 현장의 운영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제2조제3항).

10) <부록I> 필수정보: 1. 건설현장의 위치, 2. 건축업자의 이름과 주소, 3. 건설프로젝트의 유형, 4. 고객을 담당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소, 5. 안전보건 코디네이터의 이름과 주소, 6. 작업의 예상 시작 시기 및 기간, 7. 건설현장의 예상 최대 직원 수, 8. 건설현장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사업자인 고용주 및 계약자의 수, 9. 1인 사업자 및 계약자의 표시

11) 동시행령 제2조제3항의 의미에서 특히 위험한 작업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5m 이상 깊이의 굴착 또는 도랑에 빠지거나, 7m 이상 높이에서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되는 작업
2.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노출되는 작업에서의 유해 물질 조례
 a) 생물학적 제재 조례 제3조제1항의 의미에 따른 위험군 3 또는 4의 생물학적 제재
 b)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내의 위험 물질 및 혼합물
 aa) 제1호(a)
 bb) 제1호(f) 또는 제2호(a) (각각 범주 1 또는 2) 또는
 cc) 제2호 e, f 또는 g(각각 범주 1A 또는 1B)
3. 방사선방호법 및 이를 근거로 발행된 법적 규정의 의미 내에서 통제 또는 모니터링 구역의 설립을 요구하는 이온화 방사선 작업
4. 고압선에서 5m 이내 거리에서 작업하는 경우
5. 직접적인 익사 위험이 있는 작업
6. 우물 건설, 지하 토공 및 터널 건설
7. 다이빙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8. 압축 공기에서의 작업
9. 폭발물이나 폭발 코드를 사용하는 작업
10. 중량으로 인해 동력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하중을 들어올리거나 동력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중을 옮기는 경우, 견고한 건축 요소의 설치 또는 해체

3.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GeKo)

❍ 독일에서 **안전보건코디네이터**(Sicherheits-und Gesundheitskoordinator: SiGeKo)는 **최신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조정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팀원들과의 지속적 교육과 전문성 개발을 통해 최신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법률을 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특히 여러 근로자가 일하는 건설현장에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코디네이터를 임명해야 한다(제3조제1항). 안전보건코디네이터는 건설프로젝트 계획 및 실행 중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계획 중	실행 중
☑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개선 ☑ 안전보건 조정자로서의 검사 ☑ 건설현장규정, 안전보건계획(SiGe계획), 경보계획 등 중요 문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른 일반원칙의 적용 및 조정 ☑ 1인 사업자와 고용주의 의무 이행 ☑ 추가 조정에 따른 안전보건계획 수정 ☑ 다수의 고용주 간 협력 조직 구성 ☑ 고용주에 의한 작업 절차의 올바른 적용 감독 및 조정

❍ 건축주(Bauherr)가 적합한 안전보건코디네이터를 임명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에서 면책되지는 아니한다(제3조제1a항).

4. 고용주의 작업안전 조치 의무

❍ 건설현장의 고용주(Arbeitgeber)는 작업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작업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동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안전보건코디네이터의 지시 및 안전보건계획을 고려해야 한다(제5조제1항).

- ☑ 작업장비의 유지보수
- ☑ 작업자재 및 폐기물, 특히 유해물질의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조치
- ☑ 건설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의 수행 시간 조정
- ☑ 1인 사업자와 계약자(Unternehmer) 간의 협력
- ☑ 건설현장에서의 작업과 사전작업이 수행되는 현장 또는 인근 작업간의 상호 작용
- ☑ 건설현장에서 <부록 II >에 따른 특히 위험한 작업수행(Besonders gefährliche Arbeiten)

❍ 고용주는 근로자와 관련된 보호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5조제2항).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1인 사업자도 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고용주에게도 적용된다**(제6조).

❍ **고의나 과실로 다음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제1호12)에서 정의**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본다(제7조제1항).

- ☑ 관할관청에 사전통고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정확히 제때에 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건설현장을 설치하기 전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 동시행령의 제7조제1항에 언급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하게 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2호1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제7조제2항).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

1. 「사회보험공단(DGUV)규정」

❍ 독일에서는 노사가 함께 구성하는 사회보험공단(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의 **「사회보험공단규정」**은 「사회법전 제7권(SGB Ⅶ)」 제15조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규정은 **사업자와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며, 자영업자(특히,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 제6조에 따른 1인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 「사회보험공단규정」 중에서 "건설공사(101-038)"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규정 38」의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이 공사에는 **상업용 및 비상업용 건설공사를 모두 포함**한다(제1조제1항).
- 동 규정은 **사업자 및 노동자(피보험자)에게 적용**된다. **독일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자 및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와 비상업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물주에게도 적용**된다(제1조제2항).
- 건설공사에는 구조물의 제작, 조립, 유지보수, 개조, 해체 및 철거와 관련된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제2조제1항).
- 낙하가장자리란, 건설작업 중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자리를 뜻하며,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제2조제5항).

☑ 60° 이상 경사진 표면의 가장자리(예: 지붕 표면)
☑ 관통 방지 표면에서 관통 방지가 불가능한 표면으로의 전환부
☑ 경사각이 서로 다른 표면, 즉 최대 22.5° 경사진 표면에서 60° 이상 경사진 표면의 전환부
☑ 접선의 경사각이 60° 이상인 곡면의 가상선

- 계약자는 유능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감독자가 건설현장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자는 **건설작업 중 산업안전보건 및 사고예방규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제3조제1항).
- 계약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시설, 작업장비, 개인보호장비, 작업공정 및 작업자재만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 장비, 작업자재가 운영지침과 교육에 따라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제3조제5항).
- 특별한 안전 요건이 요구되는 조립, 해체 및 철거 작업의 경우, 계약자는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이러한 작업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면지침(예: 조립지침, 철거지침)을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제4조).
- 계약자는 예상치 못한 시설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제6조제3항).
- 계약자는 건설현장의 교통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고 교통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제7조제1항).

2. 「작업장안전규칙(ASR)」

❍ 독일연방의 건설현장안전보건위원회(ASGB)16)에서 만든 「작업장안전규칙(Arbeits-stättenregeln: ASR)」에서는 작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신기술과 산업의학 및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 ASR A2. 1.(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보호, 위험 지역)에서는 건설현장에서는 1m 이상의 추락높이에 대해 난간을 이용한 추락 방지 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난간의 최소 높이는 1m로 정하고 있다. 평평한 지붕의 경우, 높이 3m 이상부터 추가적 안전조치를 한다(제5호).

❍ 건설프로젝트의 위험성 평가는 모든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며, 추락방지망 또는 개인보호장비도 포함된다(제4호).

❍ **낙하물보호장치**(예: 보호지붕, 안전망)는 **낙하물의 특성 및 예상 운동에너지에 따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제6호).

□ 요약 및 결론

❍ 지금까지 독일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다. 독일은 관련 법령에서 규제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접근을 통해 사고 발생을 줄여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고 있다. 독일의 건설현장 안전 법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 첫째, **독일**은 정부 주도의 규제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회보험공단(DGUV)에서 안전규정을 제정하여,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 둘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법령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규정과 규칙들에서 상세하게 **사고예방과 노동보호조치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다. 즉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규율의 밀도가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독일에서 **건설현장 사고**는 **건설자, 소유주, 안전보건코디네이터까지 법적 책임**을 진다. 따라서 관계인 모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독일의 「건설현장안전보건시행령」 제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경영인에게 건설현장의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 재해를 막겠다는 취지이다. 독일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의 강화보다는 예방중심의 법과 제도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천 자료

- 안성경, "독일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09호, 2022.11.22.
- Donato Muro, Niklas Rahlmey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auf der Baustelle, Ratgeber, 2023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첫째주	외교통일	○ 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와 G7 플러스 추진 전략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 (2025년)한-아세안 정상회의 및 양자 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행정안전	○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제주 공공 서비스 혁신 방향 ○ 서울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취약성…맞춤형 대응 전략이 요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테슬라 오토파일럿 판결로 보는 SW안전 시사점 ○ 데이터 침해(유출) 사고 현황과 개선과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 대전시 기업체 외국인력 수요조사 ○ 기후위기 시대의 충청남도 기후환경보건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 환자안전 현황과 기술개발 동향 분석
	교육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쟁점 및 학교 지원 방안 ○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인구절벽 위기 극복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
	국방	○ 한-아세안 국방협력 확대 방안 : 평화유지활동(PKO) 협력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	○ 한국 애니메이션산업 글로벌 확장방안 연구 ○ K-웹툰 산업의 성장, 저작권 보호 기술의 전략적 활용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의 미국 선박 법제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2월 둘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리더들이 전망하는 2026년 사이버보안 이슈 ○ MCP 기반 AI 에이전트의 자율의사결정과 공공 행정혁신 전략
	국토교통	○ 천원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에 따른 개선방향
	국방	○ 2025년 북핵대화 관련 담론 전개 상황 및 시사점
	행정안전	○ 디지털 전환 시대, 거브테크(GovTech) 정책 동향과 전남의 대응
	성평등가족	○ 데이트관계 경험을 토대로 한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입법 방안
	보건복지	○ 경기도 저출생·고령화 정책 진단 및 재구조화 방안 ○ 제주지역 장년층의 노후 준비 현황과 과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직무발명 지원 정책의 성과와 활용 전략 : 컨설팅과 우수기업 인증의 상호 보완적 성장 효과를 중심으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동향 및 전망 ○K-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외교통일	○ 남과 북의 '평화공존' 담론 변화 분석 ○ 미중 전략 경쟁 속 아세안의 지역통합 노력과 한계 : 2025년 아세안 관련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대전시 청년 일경험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기획재정	○ 웹툰산업 조세지원 제도 개선 연구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견25-0401, 2025. 11. 14.)

□ 질의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제6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설의 증설 없이 저장설비를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게 되면 **액화석유가스 법령에서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액화석유가스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과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저장설비(판매시설과 영업소의 저장설비는 제외한다)의 교체 설치

7. ~ 1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2조(정기검사) ① (생 략)

②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정기검사기준: 별표 4

1의2. (생 략)

2.·3. (생 략)

③ ~ ⑥ (생 략)

2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25-0395. 2025. 11. 19.)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강연 등(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연, 강의, 행사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u>**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u>.

□ **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집행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 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자치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8호에서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무는 교육감이 집행권을 가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하 "서울시교육청조례안"이라 한다)에서 **교육감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하면서, **교육감은 강연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수요조사 실시, 정보 제공 및 홍보,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할 수 있다**고 규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조례안은 교육감에게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의 책무를 부여하면서, 관리 계획 수립·시행 등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재량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따른 특정 전문 강사 등을 초청하여 강연 등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교육감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하는 경우 전문자격, 학력, 경력,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증을 통해 외부 강사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검증된 외부 강사 등을 섭외·초청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기는 하나, 경력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외부 강사 등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때는 **경력 등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생 략)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7. (생 략)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 17. (생 략)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법제처 25-0509, 2025. 11. 25., 환경부】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하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이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로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령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두 시설은 설치의무 주체와 절차가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두 법령의 체계상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인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처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등으로 방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각 시설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임에 비하여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 11. (생 략)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생 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 8. (생 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생 략)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 15. (생 략)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법제처 25-0518, 2025. 12. 3., 국토교통부】

□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되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u>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u>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단서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하여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하여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 21.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

5.·6. (생 략)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 29.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 11. (생 략)